

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동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1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24.

발의자 : 이동섭 · 이찬열 · 주승용

장정숙 · 황주홍 · 김광수

송기석 · 박준영 · 정인화

안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,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·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, 국가는 보유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우리 민족 고유 무도(武道)인 태권도는 전 세계 179개 회원국과 6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또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,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
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태권도 진홍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태권도 진홍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태권도단체”를 “태권도단체 등”으로 한다.

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태권도 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홍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기술의 연구 개발,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태권도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
2. 태권도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
3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태권도 명인으로 활동

할 수 없게 된 때

- ④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태권도 명인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태권도 명인이 다른 분야로 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태권도 명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자금의 지원, 지급중 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장 <u>태권도단체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장 <u>태권도단체 등</u></p> <p>제21조의2(태권도 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기술의 연구 개발,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태권도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</p> <p>2. 태권도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</p>

거나 대여한 때

3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

등으로 인하여 태권도 명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때

④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태권도 명인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태권도 명인이 다른 분야로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태권도 명인의 정기준 및 절차, 자금의 지원,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